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소득 증대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4조)

- ▶ 정책적 육성 및 지원
- ▶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 ▶ 임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
- ▶ 증대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다. 지원대상자의 선정(안 제7조)

- ▶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28백만원(군비)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5. 15. ~ 2018. 6. 3.) 결과, 제출의견 1건

- 임산물 관련사업 이외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의견 있었으나, 본 조례는 임산물 재배가공 및 경영관리 등을 위해 임업인 및 임업단체를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례 제정 시 반영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반영완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 유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당 초 안	개 선 안
<p>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업인의 산림소득(이 조례에서 “산림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이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3.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성정책 및 용역
2. 재배지 경영 및 관리
3. 생산·유통 및 가공
4.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채용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지원제외)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

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

종 류	품 목 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수지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나. 관련조문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임산물 재배농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임가 비용부담 절감 및 임업 소득 향상 기여
-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87,750	
임산물 제초작업 인건비 지원	750,000*50ha*50%	18,750	
울타리 설치비 지원	5,000,000*10km*50%	25,000	
야생화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1,200*30,000장*50%	18,000	포장박스
	80,000*300포*50%	12,000	코코피트
	70,000*400박스*50%	14,000	컵박스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산림과장 김철수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85,675	27,500	87,750	87,750	87,750	376,425
	제초작업 인건비	28,125	15,000	18,750	18,750	18,750	99,375
	울타리 설치비	17,500	12,500	25,000	25,000	25,000	105,000
	야생화 포장재 지원	40,050	-	44,000	44,000	44,000	172,050
재원 조달		85,675	27,500	87,750	87,750	87,750	376,4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5,675	27,500	87,750	87,750	87,750	376,425
	지방세						
	세외수입						
	군 비	85,675	27,500	87,750	87,750	87,750	376,42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